

# 산학협력 중점교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한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임용 및 인사행정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서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료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주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업체 경력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의미한다.

1. 민간 산업체에서 전공(모집)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전공(모집)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3.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모집)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4. 각종 협회 및 단체의 경우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소관부처에 등록된 단체에서 전공(모집)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단,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업체에 한함)
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 교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제3조(직급)** 산학협력 전담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단, 학교발전에 대한 공로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제4조(공개임용의 원칙)** 신규교원은 공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일간지 광고, 전자통신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신청접수 최종일 15일 전까지 신규교원임용을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임용지원 제출서류)** ① 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2. 자기소개서
3. 대학 이상 최측학위까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산학협력 실적목록서
5. 산학협력 실적목록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
6. 기타 학교에서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임용지원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이는 임용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제6조(심사단계)** ① 신규채용심사는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기초 및 전공심사), 3차 심사(면접심사), 4차 심사(교원인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서류심사)** ① 채용학과 학과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본교의 교원 인사규정

및 공고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채용학과가 신설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1차 서류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초빙분야에 후보자가 2배수가 되지 않더라도 공개채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학과교수,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본교 소속교원이 아닌 자로 선임한다.

② 학과교수 또는 유사전공 교수는 각 학과장이 선임하고, 외부인사는 채용분야와 동일내지 유사전공자로 하되, 교무처장이 선임한다.

③ 심사위원은 3명에서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정한다.

**제9조(외부 심사위원의 부적격)**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원자의 최종학위 취득 대학에서 재직하는 자
2. 지원자의 현 재직기관에 재직하는 자
3.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4. 지원자의 추천인 또는 공동연구자

**제10조(기초 및 전공심사)** ① 기초심사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자의 채용분야 전공일치 여부를 개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당해 지원자가 전공 불일치로 판단되더라도 아래 제2호에 따라 최종 불일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지원자의 심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불일치로 판정되었을 경우, 전공 불일치로 최종 판단한다.

3. 교무처장은 기초심사에서 전공 불일치로 최종 판정된 지원자를 2차 전형(기초심사)의 기초 및 전공심사결과 총괄 표[별지 제 호 서식]의 전공심사 란을 공란으로 하여 전공심사 최종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공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③ 기초·전공심사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 전공심사 결과를 확인한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초 및 전공심사결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장은 채용 분야별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며 채용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성적 상위자 순으로 면접심사 대상자로 부의한다. 단, 면접심사가 꼭 필요한 경우 최대 3배수가 넘더라도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초빙분야에 후보자가 2배수가 되지 않더라도 공개채용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제11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위원은 소속 학과장(또는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해서 교무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

② 면접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접심사 평정 표'[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12조(종합심사)**① 종합심사위원은 교원인사위원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본교의 정체성 부합, 학문분야 적합성, 발전가능성, 학문능력과 교육능력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학교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 교회 및 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합의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용기간)** ①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단, 학교정책상 필요한 경우 4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이력서와 주무부서에서 정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임용계약은 필요한 경우 일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재임용)** ①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재임용심사 평정은 [별지 9호 서식],[별표1 ]에 의한다.

- ② 재임용의 충족요건은 합계점수가 연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나 자에 대해서는 업적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재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그 횟수는 최대 2회 내로 한다.

**제15조(의무 및 복무)** ①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대신대학교의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본교 전임교원으로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주당 책임 강의시수는 본교 강의료 지급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 ③ 산학협력 중점교원 중에서 선임하여 소속 학과의 관련 교과목의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산학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장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 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보수)** ①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급여는 본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초과강의료는 본교 강의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요한 사항은 본 법인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복무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및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공심사 평정표 (2차 심사)

접수번호		학과	초빙분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구분	심사내용				평점	평점결과
1. 학력 (배점20점)	학사과정 전공분야가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일치할 때			4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관련이 있을 때			2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관련이 없을 때			0	
	석사과정 전공분야가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일치할 때			6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관련이 있을 때			4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관련이 없을 때			0	
	박사과정 전공분야가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박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일치할 때			10	
		박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관련이 있을 때			6	
		박사과정의 전공분야와 초빙분야가 관련이 없을 때			0	
박사학위가 없을 때			0			
2. 전공관련 분야종사 경력 (배점40점)	관련 직무 종사 경력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일 때			40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6년 이상일 때			30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3년 이상일 때			20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10	
3. 종합평정 (배점40점)	직무에 종사한 산업체의 지명도 등	특히 우수한 경우			10	
		우수한 경우			7	
		보통인 경우			4	
		미흡한 경우			0	
	직무에 종사한 산업체에서의 직위	특히 우수한 경우			10	
		우수한 경우			7	
		보통인 경우			4	
		미흡한 경우			0	
	최종퇴직이후 기간의 짧은 정도	특히 우수한 경우			10	
		우수한 경우			7	
		보통인 경우			4	
		미흡한 경우			0	
산학협력전임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특히 우수한 경우			10		
	우수한 경우			7		
	보통인 경우			4		
	미흡한 경우			0		
<b>총 점</b>				<b>100</b>		
<b>종합의견</b>	(의견이 있을 때 기재바람)					

- ※ 심사방법 : 1. 각 평가항목을 심사하여 평점기준에 의거 평점결과 란에 수기로 점수를 표기함.  
 2. 학력은 ‘학사과정’ 및 석사, 박사 과정의 각 전공분야가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함.  
 3. 관련 직무 종사경력은 지원자가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제3조 ③항에 따라 판정함.  
 4. 종합평정항목 산업체에서의 최종 퇴직 이후 기간의 짧은 정도는 짧을수록 높은 평가가 주어져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 종합심사 평정표

▶학과:

▶초빙분야:

연 번	세부 전공	성명	서류심사 (P/F)	기초심사 (P/F)	전공심사 (100)	면점심사 (100)	점수합계 (200)	종합심사 (P/F)

### ◆심사기준 및 방법

1. 앞에서 진행해온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본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교 교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심사하여 평정함.

2. 지원자에 대한 본교의 정체성 부합, 학문분야 적합성, 발전가능성, 학문능력과 교육능력,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가능, 평판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함.

☞P: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고 추천할 만한 대상일 경우

☞F: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에는 아직 부적합하거나 보류할 사항이 있는 경우

3.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이상 불적격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명:

성명:

(인)

## 임용심사 최종평정 결과표

▶학과:

▶초빙분야:

### 1. 심사결과 집계표

연번	세부 전공	성명	서류심사 (P/F)	기초심사 (P/F)	전공심사 (100)	면점심사 (100)	점수합계	종합심사 (P/F)	추천 순위

### 2. 최종임용 추천대상자

연번	세부전공	성명	임용기간	임용구분	비고

평정 결과 위와 같이 하기로 하다.

년 월 일

확인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9 서식]

재임용심사 평정표(산학협력중점교원)							
영역	항 목	기준	점수	피 평정자	소속	직위	성명
산학 활동 (80)	산학협력 교육	취업 실적 연평균 인원 (10점 만점)					
		신규 인턴십 산업체 유치 (10점 만점)					
		취업 정보 수집(5점 만점)					
		창업지도(10점 만점)					
		지도학생 창업(10점 만점)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개발(10점 만점)					
		학생상담(5점 만점)					
		일경험지도(10점 만점)					
		강의평가(10점 만점): 강의가 배정된 경우만 배점					
	산학협력 연구	관련 연구논문(20점 만점)					
		산학협력활동 연구보고서(20점 만점)					
		산업체 연구비 수주(10점 만점)					
		특허 출원(10점 만점)					
		교원 창업(10점 만점)					
	산학협력 봉사	산학/현장기관 네트워킹(20점 만점)					
		인턴십, 현장실습참여기관 발굴(10점 만점)					
		산학관련 보조금 유치(30 만점)					
		학교발전기금 유치(20점 만점)					
		국책사업 및 일류화 사업참여(단장 20점, 부단장15점 부장 10점)					
교수 자질 (20)	교수기본자질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10점 만점)					
	근무성실태도	성실한 근무와 책임 있는 자세(5점 만점)					
	각종 회의 참여도	교직원 회의, 교수회의 등 각종 회의 참여도(5점 만점)					
가산점 (5)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5점 만점)					
총 계(100점 만점)							
산학활동 최대점수는 8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임용을 위해서는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 평정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별표 1]

재임용심사 평정 기준표(산학협력 중점교원)

1. 산학활동

1) 산학협력 교육

평가항목	최대점수	세부산출내역	비 고
취업실적 연 평균 인원	10	인당 2점, 최대 10점	취업증명서 제출
신규 인턴십 산업체 유치	10	산업체당 5점	관련 자료 제출
취업정보 수집	5	건당 1점	보고서 제출
창업지도	10	건당 5점	결과보고서 제출
지도학생 창업	10	건당 5점	결과 보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제출
진로 및 취업관련 책자개발	10	최대점수의 1/n, n은 집필진	교내에서 발간된 책자
학생상담	5	건당 1점	상담보고서 제출
일경험지도	10	산업체 탐방 2점 단기 현장실습 5점 장기 현장실습 10점	보고서 제출 장기 현장지도는 4주이상 지도
강의평가	10	만족도 90%이상: 10 만족도 80~90%: 7 만족도 60~70%: 3 만족도 0~59%: 0	강의가 배정된 경우에만 평가

2) 산학협력 연구

평가항목	최대점수	세부산출내역	비 고
관련 연구논문	20	국내전문 학술지 단독 15 국외전문 학술지 단독 20 * 공동저자는 1/n로 산출	학술지 판단 기준은 교원 업적평가규정 준용
산학협력활동 연구보고서	20	건당 10점	관련 보고서 제출
산업체 연구비 수주	10	5백만원당 1점 인정	관련 증빙 첨부
특허 출원	10	국내특허 건당 5점, 국제특허 건당 10점 단독 출원 100% 공동의 경우 1/n	관련 증빙
교원 창업	10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기술 등 을 활용하여 발생한 실적 회당 10 점(1회 인정)	사업자 등록증 등 창업관 련 증빙서류

3) 산학협력 봉사

평가항목	최대점수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산학/현장기관 네트워킹	20	건당 5점	계약서 또는 협약서
인턴십, 현장실습참여기관 발굴	10	유급기관 10/건, 무급기관 5/건	증명서 제출 실제 학생파견이 있는 경우 제출
산학관련 보조금 유치	30	1천만원 이상 1점	증빙서류 제출
학교발전기금 유치	20	1백만원 이상 1점	증빙서류 제출
국책사업 및 일류화사업참여	20	단장 20 부단장 15 부장 10	증빙서류 제출

[별표 1]

**재임용심사 평정 기준표(산학협력 중점교원)**

**2. 교수자질**

**1) 교수기본자질**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교육윤리 및 연구윤리, 교수로서 사회적 책임감, 윤리의식 및 태도 등에서 볼 때(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

- 탁월(10) : 교수기본자질이 탁월한 경우                      ○ 우수(8) : 교수기본자질이 우수한 경우
- 보통(5) : 교수기본자질이 보통인 경우                      ○ 미흡(3) : 교수기본자질이 미흡한 경우
- 불량(1) : 교수기본자질이 불량인 경우

**2) 근무성실태도(소속 학과장과 관련 부서장이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근무상황, 본직 충실도, 교수용 대학프로그램 참여도 등에서 볼 때,

- 탁월(5) : 성실한 근무태도가 탁월한 경우                      ○ 우수(4) : 성실한 근무태도가 우수한 경우
- 보통(3) : 성실한 근무태도가 보통인 경우                      ○ 미흡(2) : 성실한 근무태도가 미흡한 경우
- 불량(1) : 성실한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3) 각종 회의 참석(학과별 평균참석율로 적용)**

- 탁월(5) : 참석율이 탁월한 경우(90%이상)
- 우수(4) : 참석율이 우수한 경우(80%이상 90%미만)
- 보통(3) : 참석율이 보통인 경우(70%이상 80%미만)
- 미흡(2) : 참석율이 미흡한 경우(60%이상 70%미만 )
- 불량(1) : 참석율이 불량인 경우(60%미만)

**3. 가산점**

**산학협력 증진을 통해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

산학협력 증진을 통해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 등에 볼 때,

- 5점: 신·편입생 5명 이상유치                      ○ 4점: 신·편입생 4명 유치
- 3점: 신·편입생 3명 유치                      ○ 2점: 신·편입생 2명 유치
- 1점: 신·편입생 1명 유치                      ○ 0점: 신·편입생 0명 유치